

주택금융소비자 자문단 운영기준 제·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금융소비자 자문단 운영기준

2. 제·개정 이유

- 주택금융소비자 자문회의 효율성 향상 및 내실화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

3.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주택금융소비자 자문회의 개최주기 변경(분기 → 반기 1회)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3년 11월 10일까지 (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만족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2층 고객만족부
- 담당자(이메일) : 이필우 과장(1755@hf.go.kr)
- 전화번호 : 051-663-8754
- 팩스번호 : 0505-036-0972

붙임: 개정안 전·후대비표 (제정·전부개정안의 경우 전문)